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되,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모 선을 회로에 연결시킬 때까지 단락해 두어야 한다.

- (11) 모든 지발식 발파작업에는 지발식 전기뇌관, 비전기식 지발뇌관 또는 도폭선 연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 고려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.
- (12)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. 또한,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 의해 전기뇌관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3) 발파 후 즉시 발파기의 두 스위치 사이의 전선을 분리시키고 스위치는 폐쇄위 치에 두고 봉쇄하여야 한다.
- (14) 동력선, 통신망, 편의시설 및 기타 구조물 부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통고하여 안전한 통제조치를 취한 후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5) 발파기는 발파작업책임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, 발파기에 모선 의 연결은 발파작업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
- (16) 발파 스위치 열쇠는 항상 발파작업책임자가 소지하여야 한다.
- (17) 발파를 위하여 동력 회로선에서 전력을 공급할 경우 전압이 550V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.
- (18) 발파모선은 적당한 치수 및 용량의 절연된 도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19) 전기누전과 정전기를 탐지 및 측정하여야 하며 전기발파를 할 때는 5.3.5의 정전기 대책을 참조하여 정전기로 인한 폭발재해방지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4.1.2 진동 및 파손

- (1) 수중구조물, 건물 및 기타 시설내 또는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도심지 발파 등 발파에 주의를 요하는 곳은 실제 발파전 공인기관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자의 입회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3) (1)호의 경우, 필요할 때에는 소유자, 점유자 및 그 주위에 작업내용과 통제조치